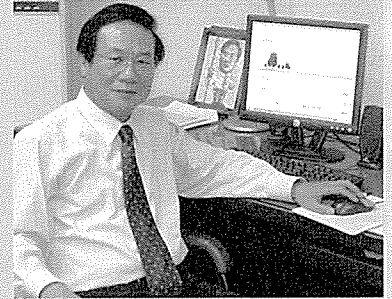


창립1주년, 회고와 전망

## 집단에너지사업의 활로를 열어간다

상임부회장 정병철



### 새로운 탄생은 창조이며 새 희망이다

사단법인 한국지역난방협회는 2004년 10월22일 출범하였다.

2004년 6월11일 집단에너지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난방사업의 보급 확대, 시설 최적화, 효율적 운영 및 안정성확보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 협력증진 등을 목표로 처음으로 지역난방사업자 8개사와 설비제조, 유지보수 사업자, 연구단체 등 20여 기관이 뜻과 힘을 한데 모아 협회를 배태(창립총회)하였다.

술한 産苦 끝에 4개월 만에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이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설립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제200444)를 받아 법원에 법인 등록을 마치게 됨으로써 마침내 산업자원부 산하단체로서의 한국지역난방협회가 탄생되는 기쁨을 회원 모두와 함께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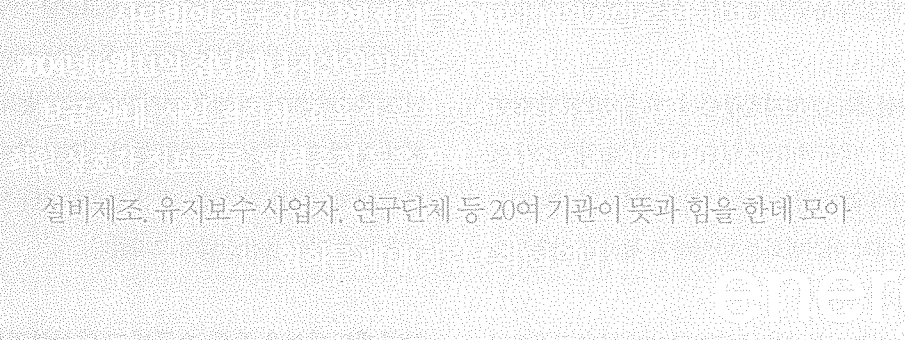
당시 협회 탄생의 주역들을 살펴보면 협회의 초대회장이었던 鄭東允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과 鄭天秀GS과 위사장을 비롯하여 鄭光宇 오산에너지사장, SH공사의 高政相단장 주택공사의 申光鉉단장, 한전기공의 李京三전 사장 등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은바 크다. 또한 맨발의

單騎匹馬로 뛰면서 법인설립허가를 일궈내어 새로운 출범의 닳을 올린 산파 역할을 담당하였던 본인으로서는 특히 창립1주년을 맞는 감회, 또한 남다른바가 있다. 아마도 迂餘曲折 끝에 협회가 설립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 열 요금의 조정 및 제도개선책 추진 첫 시동

2004년 11월 4일 이사회를 열어 법인설립에 따른 경과 조치와 당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운영위원구성과 위임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열 요금조정 및 조기개선안에 대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 11월8일에 첫 운영위원회를 열어 직무권한규정·회비규정·보수규정·직제 및 업무규정·운영위원회 규정 등 8개 규정의 제정과 4개항의 이사회 의 위임사항을 처리하여 협회운영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첫 업무로 작년 11월8일에 당시 연료비금등에 따른 열 요금 조기조정 요청서를 산자부에 제출한데 이어 12월4일에는 석유사업법 시행령정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또한 제출하는 등 지역난방사업자의 권익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추진에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협회가 설정한 사업 중엔 집단에너지사업의 안정적 사업기반확충을 위한 위협요인의 제거와 지역난방요금 제도개선 및 그 방



안마련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위협요인 제거 및 안정적 기반확충이 목표

첫째로 지역난방사업은 정부의 보호 하에 있는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지역난방사업의 위협요인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지역난방사업자간의 경쟁적요인과 다른 에너지 사업자 간의 경쟁요인, 즉 도시가스사업자간 마찰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보다 확실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게 된 것이다. ② 소비자 와 여론 (또는 언론 등)과의 관계이며 에너지정책요인, 즉 정부의 정책은 한편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③ 국제적인 요인으로 해외기업의 우리나라 진출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시 예상되는 위협요인과 기술적 요인 역시 간과해선 안 될 과제인 것이다. ④지금 지역난방사업은 사용자 및 시장으로부터 거센 위협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타 에너지사업자와의 공급구역충돌, 요금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 전력거래의 불확실성, 소비자의 공급망 이탈, 에너지공급구역의 조정, 천연가스 및 전력망에 대한 개방적 접근,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개선방안과

정책개발과 구현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인 것이다. ⑤ 또한 2007년도부터 시행예정인 배출총량제와 관련하여 허용총량할당 배출허용 거래 등 관련제도, 고체연료 사용금지 와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등 위협요인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협회가 적극 앞에 나서서 지역난방사업이 공정하게 에너지시장에서 경쟁에 참여하여 권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만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열 요금 제도개선 및 상한 재 산정 공동연구용역 추진

다음 번째 목적 사업의 추진으로는 200년 12월10일 지역난방요금 제도개선 및 상한 재 산정을 위한 정부와 사업자간,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연구용역 추진을 산자부와 협의한끝에 12월20일 산자부로부터 검토의견서를 접하여 협회주관으로 본격적 공동연구사업추진에 착수하게 되었다.

지역난방 열 요금구조는 열 요금은 열 생산요소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료비는 연료비 연동제로, 연료비를 제외한 고정비 등 제비용은 열 요금 상한제에 의해 조정된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를 산

정함에 있어 일부 추정치적용에 대한 사후정산 및 열병합발전소의 열과 전기의 원가배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열 요금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열 요금 상한제는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사업자별 상한을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99년 초 최초고시 이후 조정된 적이 없어 생산요소 투입량 변화, 열 에너지수요변동 등 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재산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열 요금 상한제도의 근거규정인 열 요금상한기준(2000년1월 제정, 2002년10월 개정)도 지역난방사업형태의 변화, 사업자의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온수냉수, 전력 등 에너지 연산 품과 에너지와 비에너지제품의 결합 생산에 대하여 원가처리기준 및 상한산정방법이 투명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또 동일지역(지자체)내에서 복수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현행 사업자별 상한 제도를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 상한요금제 이행치 않는 행정은 법 세워놓고 선별적 집행하는 사례

이에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우리협회의 주관으로 지역난방 8개 사업자가 연구사업비용을 공동 출연하여 산업자원부가 참여한 가운데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지역난방 열 요금제도개선 및 상한제도의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진단한 후 관련제도의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열 요금상한제 산정해 다음번에 있을 열요금 조정에 적극 반영해 보고자 이 사업을 추진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번의 공동연구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04년 10월29일 협회가 사업주들과 최초협의를 거친 후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협회와 20회의 협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2005년 2월11일에는 사업자간 최종협의를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공동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소비자 측의 입장을 고려한 산업자원부 측의 소극적인 입장 차이와 애초 공동연구용역에 참여하였던 일부 사업자가 이익을 제기함에 따라, 발목이 잡혀 협회가 첫 번째 사업으로 6개월 동안 심혈을 쏟아 추진해온 열 요금제도개선 및 상한제 산정 공동 연구사업은 잠정 중단 되게 되어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 상한제도개선을 통해 요금제도 완성하려던 포부가

협회는 열요금 상한제도의개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사업자의 사업성 확보 및 소비자의 후생을 보호하는 요금제도의 완성과 열 요금 상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열 요금상한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열 요금에 대한 불만을 감소시키는데 활용되는 성과를 기대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협회지 창간 CEO세미나 에너지전문가 교육훈련 사업 펼쳐

지역난방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지로서의 사명과 집단에너지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협회지인 “지역난방협회”가 2005년5월10일 창간되었다. 우리 협회지는 계간지로서 1년에 4번 발행되며 앞으로 발행 횟수를 거듭할수록 발전할 것이다.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6월28일에는 산업자원부 이원걸 제2차관초청 집단에너지사업체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전 회원사의 CEO들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7월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에 걸친 집단에너지산업 경영 및 기술 전문가과정 워크샵 35개사에서 60명의 참가한 가운데 10개 과목의 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였다. 별도 워크샵 대한 평가와 토론

이 있었는데 신선하고 수준 높은 많은 소견들이 있었다. WORKSHOP을 마치면서 교육수료자에게 협회의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환수처분, 철회를 촉구

7월초 우리협회는 감사원에서 2004.3.23~4.8까지 산업자원부에 대하여 시행한 재무감사결과 집단에너지사업용 열 병합설비에 공급한 증유 및 LNG 등에 대해 열 생산용과 전기생산용을 각각 구분하여 전기생산분에서만 수입부과금을 환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 생산 및 자가소비 전기생산에 사용된 증유 및 LNG 등에 대하여도 석유수입부과금을 부당 환급하였으므로 부당 석유부과금 환급금액 (334억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 조치하라는 요구를 산업자원부에 통보(6.29)하였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뜻밖에 이 사실을 접하게 된 협회는 해당 회원사와 긴급협의를 갖고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태의 진위파악과 검토를 한 후 향후 대책 수립에 부심하였다.

지금에 와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 병합발전시설의 에너지 효율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 공무원이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 과거수입부과금 환급분에 대해 가산금까지 붙여 환수토록한 감사원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 병합시설 에너지이용효율은 80%인데 비해 전기사업자의 발전시설 이용효율은 40%로서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전기 사업자에게는 부과금 환급 혜택을 주는 반면 에너지이용효율이 월등히 높은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조치는 형평성에도 크게 맞지 않다는 등 7개 항의 부당성을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산자부에 직접 항의 방문 강력한 협회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감사원의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금 환수조치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감사원에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환급한 석유부과금 환수조치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직접 제출하였다.

### 고유가 지속, 연료비 급등으로 열 요금조정 불가피 해

高油價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난방 열 요금 조정에 대한 검토와 그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검토배경을 보면 최근 국제유가는 멕시코만을 강타한 카트리라 내습에 따른 석유, 가스 생산중단 및 중동정세악화 등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 연료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열 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열 요금조정대책이 불가피한 것이다. <표 1 참조>

<표 1> 하반기 국제유가 및 연료비 전망을 보면

| 구분     | 단위     | 2005상반기 | 2005하반기 | 변동율   |
|--------|--------|---------|---------|-------|
| 두바이유   | \$/Bbl | 44.6    | 54.4    | 22.0% |
| 발전용LNG | 원/Kg   | 435.5   | 514.6   | 18.2% |
| LSWR   | 원/1    | 300.6   | 352.5   | 20.6% |
| B,C유   | 원/1    | 288.1   | 353.6   | 22.7% |

각사마다 손익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 연료비 변동분에 대한 06.2.1부 열 요금 조정율은 각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15%인상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된다.

따라서 사업자의 손익악화 및 사용자의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연내 (11월1일부)에 열 요금조정이 이루어지어야 한다. 국제유가 또는 환율급등락으로 연료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산자부 장관과 협의하여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산자부추과 열 요금 조정대책에 대해 계속협의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